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취업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30이하로 확대하고, 이자면제 기간을 졸업 후 2년 이내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53호, 2026. 2. 19.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이자면제 대상자로 추가(법률 제21079호, 2025. 11. 11. 시행, 2026. 5. 12. 시행)된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격확인을 위한 정보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로 해당 법에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삭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위임 조항 규정 개정(안 제9조제2항)

나. 자료요청 목록 및 관련 기관 추가(안 제42조)

-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자료요청 목록 중 하나인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정보의 근거 법률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변경(안 제42조제1항제2의2호)
- 2) 이자면제 대상인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 목록 추가(안 제42조제1항제9호)
- 3)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명확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 추가(안 제3항제2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진행예정('26.4.3.~5.13.)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사전협의 완료('26. 3. 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16조의2제3항”을 “법 제16조의2제2항제6호”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의2호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한 자료

제4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이자의 면제) ① (생 략)	제9조(이자의 면제) ① (현행과 같 음)
② <u>법 제16조의2제3항</u>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한 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학생 가 구의 소득금액(같은 조 제2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 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출 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② <u>법 제16조의2제2항제6호</u> -- ----- ----- ----- ----- ----- ----- -----.
제42조(자료 요청) ① <u>법 제37조</u>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 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 료 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자료 요청) ①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 <u>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u> <u>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u> 」 제2 <u>조제3호</u> 에 따른 이용자에 해 당하는 채무자가 이동통신서	2의2. 「 <u>전기통신사업법</u> 」 제2 <u>조제9호</u> ----- ----- -----

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채무자에게 상환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는 용도로 한정한다)	----- ----- ----- ----- -----
3. ~ 8의3. (생략) <u><신설></u>	3. ~ 8의3. (현행과 같음)
9.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생략)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9.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한 자료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현행과 같음)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268